

# 2026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

2026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시험일자: 2026년 6월 22일(월)-6월 26일(금), (6월 24일(수) 휴식일)

2.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시험일자	시험시간 및 시험과목				입실시간	
	시험과목	오 전		오 후		
		시간	문형(배점)	시간		문형(배점)
6/22 (월)	공 법	10:00-11:10	선택형(100점)	13:30-15:30	사례형(200점)	
17:00-19:00				기록형(100점)		
6/23 (화)	형사법	10:00-11:10	선택형(100점)	13:30-15:30	사례형(200점)	
17:00-19:00				기록형(100점)		
6/24 (수)	휴 식 일				- 오전시험 : 09:20 - 오후시험 : 시험 시작 40분 전 ※ 시험실개방 08:20	
6/25 (목)	민사법	10:00-12:00	선택형(175점)	14:30-17:30		기록형(175점)
6/26 (금)	민사법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(택1)	10:00-13:30	민사법 사례형(350점)	16:00-18:00		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(택1) 사례형(160점)

3. 답안 작성 방식

구분	답안 작성 방식	비고
선택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기(手記) 방식</li> <li>-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</li> </ul>	기존 방식과 동일
논술형 (사례형, 기록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컴퓨터 작성 방식(IBT)</li> <li>- 개인별 노트북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</li> <li>▪ 수기 방식(기존 방식과 동일)</li> <li>-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</li> </ul>	두 가지 방식 중 택일

**\*신청기간 내 IBT 미신청 시 수기로 진행 예정(구제없음.)**

**4. 시험장소 : 제1법학관 403-406호 (시험시간 외 사용 및 개인 물품 방치 금지)**

**\*분실, 도난, 화재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 행정실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.**

☞ 응시자별로 배정된 강의실이 상이하니 필히 별도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6. 응시자준수사항 등**

**가.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**

-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도 필요)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
  -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   - ※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(인적사항, 지문정보 등)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.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-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(예: 원터치 캔음료, 일회용 커피 음료 등) 반입이 금지되며,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합니다.
-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(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),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,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 이는 사정위원회에 보고되어 성적 산출 및 합격 여부 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안내드립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,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표(뒷면 포함)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,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 행위도 금합니다.
-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지시에 따라 응시표, 신분증,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(책, 휴대폰 등)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. (전자기기 전원종료 必)
  - ※ 시험시간 중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된 경우,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정위원회에서 성적 산출 및 합격 여부 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안내드립니다.(단순 소지 또는 책상 보관 포함)
- 답안지,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, 법전, 기타 소지품(책 등)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,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.
-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,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.
- 답안지에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
### **[시험 추가 유의사항]**

- **선택형**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, **논술형**(사례형·기록형)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 없이 **프로그램으로**

자동 진행됩니다.

-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,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,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,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,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 처리됩니다. 또한, 그 시험이 결시 처리 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※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.

## 나. 시험시간 중

-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, 신분증, 필기구 이외의 물품(포스트잇, 메모지, 스테이플러, 칼, 가위, 독서대 등)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(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).
- 소음·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, 이에 따라야 합니다.
-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**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**(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).
- ※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,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,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본인 노트북 화면도 잠금 처리(프로그램 우측 상단 자물쇠 모양 아이콘 클릭)하여야 합니다.

## 다. 답안 작성 시

### 【선택형 시험】

-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'●'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,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답안지는 반드시 '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'(사인펜에 '컴퓨터용'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)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- ※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(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)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(단,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).
  - ※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자 간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의 필기구를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 【논술형 시험】

-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정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(수기 방식만 해당)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각 문항의 답안을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- 답안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,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, 수정액·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(수기 방식만 해당).
-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,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

이를 회수합니다.

-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 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,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.
-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, 밑줄,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 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다.

※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## 라. 시험 종료 시

### [IBT 방식 시험]

-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,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된 법전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.

### [수기 방식 시험]

-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, 이를 위반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-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,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,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.

## 마. 기 타

-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 (교시별 응시제한자 포함)

○ 시험기간 전일 21:00이후 - 시험종료 시 까지 시험장(강의실) 내 모든 자습 및 출입이 중단됩니다. (실제 시험 응시 시간 제외)

\*시험 중 시험장 외 4층 자습실은 폐쇄됩니다.

## 7.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

### 가. 부정행위자의 종류

1.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시험 도중 시험장 내외부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자
2. 시험을 대리로 응시하는 자
3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자
4. 통신기구나 그 밖의 신호로 해당 시험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자
5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자
6.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

### 나.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

1.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시간 시험을 임의 중지하거나 시험이 종료된 후 사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가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

나.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

다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

라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

마.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

바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

끝.